

신구조문 대비표(변경의 경우) :

변경 전	변경 후
제 1조 (목적)	제 1조 (목적)
<p>제2조 (용어의 정의)</p> <p>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p> <p>가.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p> <p>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p> <p>다.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p> <p>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p> <p>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p> <p>16. “단말기지정 및 이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의 IP, MAC주소 등 기기정보를 은행에 등록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p> <p>17. “추가적인 보안조치”라 함은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제6호의 접근매체 이외의 휴대폰 문자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이용)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p>	<p>제2조 (용어의 정의)</p> <p>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p> <p>가.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p> <p>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생성정보 또는 <u>인증서</u></p> <p>다.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p> <p>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p> <p>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p> <p>16. “단말기지정 및 이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u>전자금융거래 시 계좌이체가</u>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의 IP<u>주소</u>, MAC주소 등 기기정보를 은행에 등록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p> <p>17. “추가적인 보안조치”라 함은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제6호의 접근매체 <u>외의</u> 휴대폰 문자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이용)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p>
제3조 (적용되는 거래)	제3조 (적용되는 거래)
<p>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 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p> <p>2. 컴퓨터에 의한 거래</p> <p>3. 전화기에 의한 거래</p> <p>4. 직불카드단말기에 의한 거래</p> <p>5.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p>	<p>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p> <p>2. 컴퓨터에 의한 거래</p> <p>3. 전화기에 의한 거래</p> <p>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p>
제4조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	제4조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

결 및 해지)	결 및 해지)
<p>1. 단순조회(예금잔액, 예금 입·출금내역 등)</p> <p>2.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p> <p>3. 현금자동지급기, 자동 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p> <p>4. 기타 은행이 정하는 거래</p> <p>제5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접근매체의 개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p> <p>1. 개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개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p> <p>2. 개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p> <p>제6조 (접근매체의 관리)</p> <p>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또는 양도·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p>	<p>1. 단순조회 (예금잔액, 예금입출금내역 등)</p> <p>2.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p> <p>3. 기타 은행이 정하는 거래</p> <p>제5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접근매체의 개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p> <p>1. 개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u>6개월</u>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개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u>한다</u>) 동의를 얻은 경우</p> <p>2. 개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리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p> <p>제6조 (접근매체의 관리)</p> <p>이용자는 <u>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u>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p> <p>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p>

한다.	<p><u>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u></p> <p>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p> <p>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p>
<p>제7조 (공인인증서 사용)</p> <p>①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본인계좌에 대한 조회업무</p> <p>2. ARS(자동응답서비스),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장치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p> <p>3.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p> <p>4.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써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또는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p> <p>5.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경우</p> <p>6.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p> <p>② 이용자가 계좌이체를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지정된 단말기 또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여야 한다.</p>	<p>제7조 (은행이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p> <p>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u>은행이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u></p>
제8조 (이용시간)	제8조 (이용시간)

<p>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전 본점 및 영업점,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u>은행이</u>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린다.</u>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9조 (수수료)</p> <p>② 수수료는 은행의 수수료율 계산 방법에 따르며, 은행이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본점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일 1개월 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p>	<p>제9조 (수수료)</p> <p>② <u>은행은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9조를 준용한다.</u></p>
<p>제10조 (이체 한도)</p> <p>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지정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p>	<p>제10조 (이체 한도)</p> <p>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지정방법에 따라 <u>계좌이체, 추심이체,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u></p>
<p>제11조 (거래의 성립)</p> <p>3.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은행이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모두 확인한 때</p> <p>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는 은행이 이용자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p>	<p>제11조 (거래의 성립)</p> <p>3.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은행이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u>입금자금을 확인한 때</u></p> <p>4. 예약에 의한 <u>계좌이체,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u> 경우는 은행이 이용자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p>
<p>제12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p> <p>① 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은행이 정한 시간내</p>	<p>제12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p> <p>① 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 <u>또는 단말기 정보</u>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은행이 정한 시간내</p>

<p>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은행은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p>	<p>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은행은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u>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u></p>
<p>⑤ 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인출한다.</p>	<p>④ 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인출한다.</p>
<p>⑥ 대량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를 처리한다.</p>	<p>⑤ 대량계좌이체, <u>다른 은행으로의 이체</u>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지시를 처리한다.</p>
<p>⑦ 타행계좌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한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p>	<p>⑥ <u>다른 은행으로의 이체</u>는 당일 중에 처리한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p>
<p>⑧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한다</p>	<p>⑦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u>예약에 의한</u> 추심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한다</p>
<p>⑨ 제7항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은행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한다.</p>	<p>⑧ <u>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은행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다음 영업일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u></p>
<p>제13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p> <p>① 은행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 	<p>제13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p> <p>① 은행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 또는 은행이 정한 기타 전

<p>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p>	<p><u>자서명이 있는</u>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p>
<p>제14조 (거래의 제한)</p>	<p>제14조 (거래의 제한)</p>
<p>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당해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p>	<p>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u>해당</u>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p>
<p>6.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 확인 이외에 은행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6.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 확인 <u>외에</u> 은행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가.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적인 보안조치가 불가하여 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p>	<p>가.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u>추가적인 조치가</u> 불가하여 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p>
<p>나. 휴대폰 문자 통지로 이체거래 결과를 받기로 한 경우</p>	
<p>다. 해외 출국사실이 확인된 경우</p>	<p>나. 해외 출국사실이 확인된 경우</p>
<p>라. 점자보안카드 및 보안토큰을 이용하는 경우</p>	<p><u>다. 점자보안카드를 이용하는 경우</u></p>
<p>마.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이용하는 경우</p>	<p><u>라.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이용하는 경우</u></p>
<p>7.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 하다고 은행이 인정했을 때</p>	<p>7. <u>압류, 가압류, 거처분 등</u>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 하다고 은행이 인정했을 때</p>
<p>제15조 (지급의 효력발생시기)</p>	<p>제15조 (지급의 효력발생시기)</p>
<p>③ 전자화폐, 전자채권 등 그 밖의</p>	<p><u>③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u></p>
	<p><u>④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u></p>

<p>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p>	<p>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u>등</u>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p>
<p>제16조 (거래지시의 철회) 제17조 (거래내용의 확인)</p>	<p>제16조 (거래지시의 철회) 제17조 (거래내용의 확인)</p>
<p>① 은행은 제15조의 거래의 처리 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타행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린다.</p>	<p>① 은행은 제15조의 거래의 처리 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u>은행으로의 이체</u>,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린다.</p>
<p>제18조 (오류의 정정)</p>	<p>제18조 (오류의 정정)</p>
<p>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은행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은행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u>취한 후</u>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u>원인과 처리결과</u>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은행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은행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u>원인과 처리결과</u>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p>
<p>제19조 (사고·장애시의 처리)</p>	<p>제19조 (사고·장애시의 처리)</p>
<p>①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 수단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①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u>접근 매체의</u>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 지시 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p>	<p>④ 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금계좌로</p>

<p>입금처리하고 이용자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0조 (손실부담 및 면책)</p>	<p>입금처리하고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0조 (손해배상 및 면책)</p>
<p>① 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4.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 	<p>①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p> <p>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

<p>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p> <p>5. 이용자가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p> <p>가. 누설 ·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p> <p>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p> <p>6.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p> <p>③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은행은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p>	<p>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p> <p>2. 제3자가 권리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p> <p>3.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p> <p>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p> <p>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p> <p>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p> <p>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p>
<p>제21조 (거래기록·자료의 제공)</p> <p>⑤ 은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p>	<p>제21조 (거래기록·자료의 제공)</p> <p>⑤ 은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p>

<p>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한다</p> <p>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 포함한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한다</p> <p>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를 <u>교부</u></p>
<p>제22조 (거래기록의 보존)</p> <p>제23조 (통지방법 및 효력)</p>	<p>제22조 (거래기록의 보존)</p> <p>제23조 (통지방법 및 효력)</p>
<p>① 은행은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① 은행은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u>하</u>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② 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p> <p>③ 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에 따라 제2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p>	<p>② 은행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p>
<p>제24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p> <p>제25조 (준수사항)</p>	<p>제24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p> <p>제25조 (준수사항)</p>
<p>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p>	<p>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u>위하여</u>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p>
<p>제 26조 (거래내용 녹음)</p> <p>제27조 (비밀보장의무)</p>	<p>제 26조 (거래내용 녹음)</p> <p>제27조 (비밀보장의무)</p>
<p>①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p>	<p>①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p>

<p>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u>안된다</u>.</p>
<p>제28조 (약관의 명시·교부·설명)</p> <p>① 은행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② 은행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p> <p>1. <u>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u></p> <p>2. <u>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u></p>	<p>제28조 (약관의 변경)</p> <p>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본점 및 영업점 및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는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p>
<p>제29조 (약관의 변경)</p> <p>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u>그 내용을</u>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u>영업점에</u>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p>	

<p>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의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服務或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p>
<p>제29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p> <p>제30조 (이의제기 및 협조)</p>	<p>제30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p> <p>제31조 (이의제기 및 협조)</p>
<p>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 이용자는 제20조 제1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u>한국소비자원</u>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 이용자는 제20조 제2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32조 (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p>

	<p><u>이용자가 송금금액, 수취은행,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이하 '착오송금'이라 한다)하였음을 은행에게 통지하는 경우 은행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한다.</u> <u>2.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다른 경우 수취은행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은행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한다.</u>
제31조 (준거법)	제33조 (준거법)

